

1. 개정이유

2020년 10월 20일 공포한 개정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, 과태료 등 일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구급상황센터의 감염병환자등의 관련 전파·보고(제13조의2 제2항)

나. 재외국민등 의료상담 및 응급의료서비스 지원(제13조의3 신설)

1) 해외 위난 시 「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」과 관련하여 응급의료 상담 및 응급의료서비스 등 필요한 조치와 업무를 지원할수 있도록 함

2) 해상 선원 및 승객에 대한 의료상담등 응급의료서비스를 하던 것을 영해·공해 선원·승객과 항공기 승무원·승객에게도 응급상황에 대한 의료상담등 응급의료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하도록 함

다. 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 신설에 따라, 동법 시행령의 항공구조구급대(원)의 명칭을 119항공대(원)로 변경하고자 함(제15조부터 제18조까지)

라. 감염병환자등의 통보대상기관에 질병관리청장을 추가하고, 통보해야 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, 필요시 관계기관간 협의를 통하여 추가할 수 있도록 함(제25조의2 제1항)

- 마.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환자등을 통보할 경우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(제25조의2 제2항)
- 바. 의료기관의 장이 감염병 발생 통보시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근거 및 구체적인 통보방식을 규정(제25조의2 제3항)
- 사.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(과태료 "200만원 이하"에서 "500만원 이하")(부칙)

2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없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020. 11. 12. ~ 12. 23.) 예정
3) 행정규제 : 해당없음
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구급상황센터는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중요 사항을 구급대원, 유관 기관 등에 전파·보고하여야 한다.

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3(재외국민 등 의료상담 및 응급의료서비스) ① 소방청장은 재외국민, 영해·공해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·승객 등(이하“재외국민 등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제공하는 의료상담과 응급의료서비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.

1. 응급질환 관련 상담과 응급의료 관련 정보 제공
2. 해외 위난 상황시 (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 조력법 제16조) 응급의료 상담 및 응급의료서비스 등 필요한 조치 및 업무 지원
3. 영해·공해 선원·승객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 지원
4. 항공기 승무원·승객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 지원
5. 재외공관에 대한 의료상담·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등의 지원

6.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소방청장은 재외국민 등에 관한 의료상담 및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 유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협력하여야 한다.

③ 소방청장은 재외국민 등에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·집행하여야 한다.

제15조의 제목 “(항공구조구급대의 편성과 운영)”을 “(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“항공구조구급대”를 각각 “119항공대”로 한다.

제16조의 제목 “(항공구조구급대의 업무)”를 “(119항공대의 업무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항공구조구급대”를 “119항공대”로 한다.

제17조의 제목 “(항공구조구급대원의 자격기준)”을 “(119항공대원의 자격기준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항공구조구급대원”을 “119항공대원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항공구조구급대”를 “119항공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항공구조구급대원”을 “119항공대원”으로 한다.

제25조의2 제목 중 “감염병환자등의 통보방법 및 내용”을 “감염병환자등의 통보대상, 방법, 절차 및 내용”으로 하며,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질병관리청장과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의 제1급 감염병과 제3호의 제2급 감염병 중 결핵, 수두, 홍역으로 한다. 다만,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의 안전 및 감염병 확산 방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.

② 질병관리청장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의 신고를 접수한 즉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발생 정보 등을 관련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의료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발생 정보 등을 구두, 전화(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), 팩스,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, 정보시스템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소방청장 또는 관할 시도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때 제1급 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, 제2급 및 제3급 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3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)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를 자수한 경우
- 3) 위반 이후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가.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구조·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	법 제30조제1항	200	400	500
나.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구조·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인 것으로 거짓으로 알려 구급차등으로 이송되었으나 이송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	법 제30조제1항	500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의2(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~ ④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3조의2(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 치 및 운영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구급상황센터는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중요 사항을 구급대원, 유관기관 등에 전파·보고하여야 한다.</u>
<u>⑤ (생략)</u> <u><신설></u>	<u>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</u> <u>제13조의3(재외국민 등 의료상담 및 응급의료서비스) ① 소방청장은 재외국민, 영해·공해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·승객 등(이하 “재외국민 등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제공하는 의료상담과 응급의료 서비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.</u> <u>1. 응급질환 관련 상담과 응급의료 관련 정보 제공</u> <u>2. 해외 위난 상황시 (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 조력법 제16조) 응급의료 상담 및 응급의료 서비스 등 필요한 조치 및 업무 지원</u> <u>3. 영해·공해 선원·승객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 지원</u> <u>4. 항공기 승무원·승객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 지원</u>

제15조(항공구조구급대의 편성과 운영) ① 소방청장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항공구조구급대를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.

② 소방본부장은 시·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구조구급대를 편성하여 운영하되,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·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.

5. 재외공관에 대한 의료상담·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등의 지원
6.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② 소방청장은 재외국민 등에 관한 의료상담 및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 유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협력하여야 한다.
- ③ 소방청장은 재외국민 등에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·집행하여야 한다.

제15조(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)

- ① -----
----- 119항공대 -----

-----.
- ② -----
----- 119항공대 -----

-----.

제16조(항공구조구급대의 업무) 항공구조구급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~ 7. (생략)

제17조(항공구조구급대원의 자격 기준) 항공구조구급대원은 제6조에 따른 구조대원의 자격기준 또는 제11조에 따른 구급대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,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항공 구조·구급과 관련된 교육을 마친 사람으로 한다.

제18조(항공기의 운항 등) ① 항공구조구급대의 항공기(이하 “항공기”라 한다)는 조종사 2명이 탑승하되, 해상비행·계기비행(計器飛行) 및 긴급 구조·구급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사 1명을 추가로 탑승시킬 수 있다.

② (생략)

③ 조종사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탑승자의 위험물 소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, 탑승자는 항공구조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
④·⑤ (생략)

제16조(119항공대의 업무) 119항공대-----
-----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119항공대원의 자격기준) 119항공대원-----

-----.

제18조(항공기의 운항 등) ① 119항공대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119항공대원-----
-----.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제25조의2(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방법 및 내용) ①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(이하 이 조에서 “감염병환자등”이라 한다)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구두, 전화(문자메시지 등을 포함한다), 팩스,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 등의 방법 중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소방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의료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등에게 통보하는 경우 그 통보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다만, 동일한 감염병으로 진단된 감염병환자등의 발생사실을 추가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환자등의 감염병명과 발병일
2. 해당 감염병의 주요 증상
3. 이송한 구급대원에 대한 감염관리 방법 등 안내 사항

제25조의2(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대상, 방법, 절차 및 내용) ① 질병관리청장과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제1급 감염병과 제3호의 제2급 감염병 중 결핵, 수두, 홍역으로 한다. 다만,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의 안전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.

② 질병관리청장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의 신고를 접수한 즉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발생정보 등을 관련 정보시스템으로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③ 의료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「감염병 발생통보서」를 구두, 전화(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), 팩스,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, 정보시스템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소방청장 또는 관할 시도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때 제1급 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, 제2급 및 제3급 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소방청 119구급과	
연 락 처	(044) 205 - 7632
소방청 항공통신과	
연 락 처	(044) 205 - 7701
소방청 코로나19구급지원 긴급대응반	
연 락 처	(044) 205 - 7721